

축산물(꿀) 등급판정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 이내
------	-----	-------------

신청인	①성명	②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③업체명	
	④주소 (전화번호:)	

식품 소분업소	⑤업체명	⑥사업자등록번호
	⑦대표자	
	⑧소재지 (전화번호:)	

사육 농가	⑨성명	⑩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⑪농장명	⑫고유번호
	⑬주소 (전화번호:)	

⑭생산관리번호	⑮밀원(蜜源)	⑯채밀(採蜜) 지역	⑰채밀 날짜	⑱중량	⑲비고

「축산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⑳대리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

유의사항

1. ①~④란 및 ⑨~ ⑬란은 신청인이, ⑤~⑧ 및 ⑭~ ⑳란은 식품소분업 영업자가 각각 적습니다.
2. ⑨~⑪란 및 ⑬란은 꿀을 실제 채밀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"신청인과 같음"으로 적습니다.
3. ⑫란은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부여한 양봉농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.
4. ⑭란의 생산관리번호는 등급판정 신청한 꿀을 구분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시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.
5. ⑮란은 "아까시꿀", "밤꿀", "잡화꿀"로 밀원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6. ⑯~⑰란은 사육농가에서 실제 채밀한 지역 및 날짜를 적습니다.
7. ⑱란은 드럼단위 중량(용기 중량 제외)을 킬로그램(kg)으로 적습니다.
8. ⑳란은 식품소분업 영업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